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위임 범위 확대〉
■ 정부 제출안(의안번호 제220119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위임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 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위임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	

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 ----- 해당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023년 10월 27일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2)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의 사전 차단, 3) 자치법규의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4)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음.¹⁾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법률 81개, 하위법령 65개) 정비를 추진 중임²⁾.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법제처 보도자료, 2023.11.10.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에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자전거 주차장 설치·운영 관련 위임사항>

현행법상 위임범위		시행령 내용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제11조①~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현행 유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10%~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 수의 주차장을 설치 (설치기준 1/2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 시설물별 설치 비율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³⁾ 에서 <삭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붙임 [참고1] 주요 정비 사례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전국적·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자전거 주차장의 의무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삭제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기준은 ①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③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 포함할 관리·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법규정의 단순 반복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특히,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업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자치사무로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정되고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 조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337

4) 헌법재판소 2002헌바76 결정, 2004.9.23.

참고1**주요 정비 추진 사례 (법제처 보도자료, 2023.11.10.)****□ 조례위임 범위 확대**

연번	제명	세부 내용	소관부처
1	건축물관리법	지자체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위임함.	국토교통부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자체장이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산림청
3	온천법 시행령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함.	행정안전부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함.	행정안전부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함.	행정안전부

□ 지방자율성 제고 : 중앙부처 승인·협의·보고 최소화

연번	제명	세부 내용	소관부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등을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계획 및 결과를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참고2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 **36,133개소 / 682,972대 ('23년 기준)**

※ ('21) 34,938개소 / 667,560대 → ('22) 39,062개소 / 774,809대

(단위 : 개소, 대)

시·도	계	
	개소	주차가능대수
합 계	36,133	682,972
서 울	4,619	123,529
부 산	1,073	13,398
대 구	1,305	21,974
인 천	1,289	27,383
광 주	1,537	17,316
대 전	880	9,107
울 산	244	4,935
세 종	1,183	13,769
경 기	8,691	222,880
강 원	1,881	24,093
충 북	857	10,579
충 남	3,184	51,866
전 북	1,117	31,686
전 남	2,549	32,895
경 북	1,267	17,193
경 남	3,215	45,049
제 주	1,242	15,320

※ 자료 : 행정안전부